

1. 개정이유

철도시설에 대한 정밀진단·성능평가 업무의 부실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등을 대행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정밀진단과 성능평가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58호, 2020. 6. 9. 공포,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정밀진단·성능평가 실시자의 교육, 하도급의 제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밀진단·성능평가 실시자에 대한 교육(안 제10조의2 신설)

정밀진단·성능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신규교육과 5년마다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철도협회·철도안전 전문기관·정보통신공사협회 등을 통해 7~70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함

나.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안 제10조의3, 제10조의4 신설)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대상과 조사·분석방법의 적정성

과 보수·보강방법의 적정성 등 평가사항을 정하고, 결과보고서의 부실정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정밀진단은 3개월 이내 성능평가는 2개월 이내 수정·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함

다. 하도급의 통보(안 제16조 신설)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안 제18조, 제19조 신설)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 기술인력 및 자본금에 대한 증명자료 등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시·도지사는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신청분야에 따라 구조물, 궤도, 건축, 전철전력, 신호제어, 정보통신 분야별로 등록을 해주도록 하고,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증 발급대장과 등록대장을 기록하고 유지·관리하도록 함

마.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사항 변경, 양도양수 등(안 제21조, 제22조 신설)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사항이 변경되거나, 휴업·재개업·

폐업하는 경우 해당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영업의 양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도 계약서 사본 등 관련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시·도지사가 보완 요청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교육훈련 등) ① 영 제28조제3항 및 제31조제6항에 따라 정밀 진단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신규교육 및 신규교육 이수 후 5년마다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3조의2에 따라 설립된 철도협회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교육기관
3. 「철도안전법」 제69조에 따라 지정된 철도안전 전문기관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정보통신공사협회

② 제1항에 따른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에 관한 교육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

	정밀진단	성능평가
신규교육	70시간	14시간
보수교육	14시간	7시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그 내용 등 교육훈련 실시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의3(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파손이나 공중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민간관리주체를 지도·감독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밀진단이나 성능평가의 실시결과에 대하여 부실 점검·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3. 관리주체, 법 제44조의3에 따른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정밀진단이나 성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부실 점검·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정밀진단이나 성능평가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철도시설 전체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의 방법과 그 결과의 적정성

2.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결과에 따라 제시된 보수·보강방법의 적정성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시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한 결과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 결과보고서가 부실하다고 평가하는 때에는 부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우 불량, 불량 및 미흡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부실 구분의 판단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에 따라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평가하는 경우 그 결과보고서가 법 제31조제3항 및 제33조제5항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한 관리주체,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이들을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의4(부적정한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 실시결과의 수정·보완)

①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수정·보완의 제출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한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불복절차의 진행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1. 정밀진단: 법 제33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

부터 3개월 이내

2. 성능평가: 법 제33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
부터 2개월 이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물이 공사 중이거나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를 대행한 자가 폐업했거나 영업정지 중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기한까지 결과보고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중 “별표와”를 “별표1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하도급의 통보) 영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하도급의 통보를 하려
는 법 제44조의3에 따른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별지 제10호서
식에 하도급 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리주체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진단측정 장비) 영 제34조의3 및 영 별표 5의3에 따라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진단측정 장비는
별표2와 같다.

제18조(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① 법 제44조의3제1항
에 따라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정부조달협정
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을 기재한 서류
2. 법인의 임원 또는 기술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29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그 임원 또는 기술인력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3. 등록분야별 별지 제12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장비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4. 법인인 경우에는 직전회계연도 또는 개시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을 말한다)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 명세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5.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외국인 투자를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 투자한 금액과 그 비율이 기재되어야 한다)

가.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을 포함한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법인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제1호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대표자·임원이나 기술인력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일 때에만 해당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일 때만 해당한다)

제19조(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신청분야에 따라 구조물, 궤도, 건축, 전철전력, 신호제어, 정보통신 분야별로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② 법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③ 시·도지사는 법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대장 및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등록사항을 기록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대장 및 등록증 발

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 영 제34조의3제1항 및 영 별표 5의3에 따라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이 확보해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자격 인정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다만,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외국법인에 소속된 외국인인 기술인력은 당사자의 기술자격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를 준용한다.

제21조(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변경·휴업·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와 등록증 재발급) ①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4조의3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44조의3제5항에 따라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휴업·재개업·폐업 신고서에 휴업·재개업·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및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①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44조의8제1항에 따라 영업의 양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양수인과 공동으로 별지 제19호서식의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제18조제1항 각 호의 서류
3. 정기점검등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수행 중인 정기정검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법 제44조의8제1항에 따라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별지 제20호서식의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법인합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제18조제1항 각 호의 서류
5. 정기정검등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수행

중인 정기점검등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이 영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양수인등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진단측정 장비(제17조 관련)

1. 구조물, 궤도 및 건축

가. 공통

- 1) 균열폭측정기(7배율 이상이고, 라이트부착형일 것)
- 2) 반발경도측정기(교정장치를 포함할 것)
- 3) 초음파측정기(초음파 전달시간을 0.1 μ s 까지 분해가 가능할 것)
- 4) 철근탐사장비
- 5) 철근부식도측정장비(자연전위법 또는 전기저항법으로 측정이 가능할 것)
- 6) 염분측정장비
- 7) 코어채취기
- 8) 도막(塗膜)두께측정장비(측정범위가 0.1mm 이하일 것)
- 9) 측량기[수준(水準)·각도·거리 측정용]
- 10) 강재비파괴시험장비

가) 자분(磁粉)탐상기(Magnetic Testing, MT)

나) 초음파시험기(Ultrasonic Testing, UT)

나. 구조물

- 1) 정적 변형측정장치
- 2) 동적 변형측정장치
- 3) 내공변위측정기(정밀도가 0.01mm 이상일 것)

다. 궤도분야

- 1) 궤도검측기(트랙마스터)
- 2) 레일탐상기
- 3) 도상저항력측정기
- 4) 레일축력측정기
- 5) 레일경도측정기
- 6) 레일직진도검사기
- 7) 선로게이지(궤간게이지)
- 8) 토크렌치(디지털)
- 9) 레일마모 Profile 측정기

라. 건축분야

- 1) 진동측정기
- 2) 정적 변형측정장치

2. 시스템분야

가. 전철전력분야

- 1) 절연저항측정기
- 2)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 3) 차단기 동작분석기
- 4) 절연유가스분석기
- 5) SF6가스 분석기
- 6) 자분탐상기
- 7) 접촉저항측정기
- 8) 아연도금피막측정기
- 9) 콘크리트강도측정기
- 10) 가선측정기
- 11) 각도측정기
- 12) 거리측정기
- 13) 토크측정기

나. 신호제어분야

- 1) 열화상 카메라
- 2) 절연저항계(DC 500V이상)
- 3) 궤도단락저항 측정기
- 4) 두께 측정기(Thickness Gauge)
- 5) TTM(T121 Test Meter)
- 6) 내부저항측정기
- 7) 광(원)파워메타
- 8) 멀티미터
- 9) 버니어캘리퍼스
- 10) 전환력측정기

다. 통신분야

- 1) 절연저항계(DC 500V이상)

- 2) 저항, 컨덕턴스 측정기
- 3) 멀티미터
- 4) 열화상 카메라
- 5) 광(원)파워메타
- 6) 전계강도측정기
- 7) 스펙트럼 아날라이저
- 8) BER 측정기
- 9) 네트워크 아날라이저

비고

진단측정 장비는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정·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정·교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요성능을 갖춘 장비여야 한다.

[별표 3]

기술인력의 기술자격 인정기준(제20조 관련)

참여 및 등록분야	직무분야	전문분야	
1. 구조물분야	1) 토목	가) 토질·지질 다) 토목구조 마) 도로 및 공항	나) 토목시공 라) 토목품질관리 바) 철도·삭도
2. 궤도분야	1) 토목	철도궤도	
3. 건축물분야	1) 토목	가) 토질·지질 다) 철도·삭도	나) 토목품질관리
	2) 건축	가) 건축구조 다) 건축시공	나) 건축품질관리 라) 건축계획·설계
4. 전철전력분야	1)전기철도	전기철도	
5. 신호제어분야	1)철도신호	철도신호	
6. 정보통신분야	1)정보통신	정보통신	

비고

- 위 표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와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다.

하도급 의 통 보

① 시설물명(시설물번호)		
② 시설물 소재지		
수 급 인	③ 상호 및 대표자	
	④ 사무소 소재지	
하수급인	⑤ 상호 및 대표자	
	⑥ 업종 및 등록번호	
	⑦ 사무소 소재지	
하도급 내용	⑧ 분 야	
	⑨ 기 간	. . . ~ . . .
	⑩ 하도급 액수	천원
	⑪ 주요과업내용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하도급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 급 인 (서명 또는 인) 관리주체 귀하		

※ 첨부서류: 하도급 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 사본 1부

210mm×297mm[백상지(80g/㎡)]

[] 신규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 재발급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상호	생년월일	성별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분야	
------	--

위 신청업종 외에 따로 신청한 업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신규 []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을 기재한 서류 1부 2. 법인의 임원 또는 기술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그 임원 또는 기술인력의 진술서로서 그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1부 3.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4. 법인인 경우에는 직전회계연도 또는 개사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을 말합니다)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 명세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1부 5.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 투자한 금액과 그 투자율이 기재되어야 합니다)1부 가.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을 포함합니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법인인 경우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대표자·임원이나 기술인력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1호 및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인등록번호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면심사	→	기안·결재	→	등록결과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시·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기술인력 보유현황

진단업체명(등록번호) :

등록 분야	구 분	성명	생년 월일	직무분야		전문분야		교육 수료	입 사 연월일	퇴 사 연월일	비고
				분야	등급	분야	등급				
	가 급										
	나 급										
	다 급										
	기 타										

작성방법

1. 보유기술자 중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수행하는 기술자는 모두 등록해야 하며, 구분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의3 분야별 기술인력 기준의 가목, 나목 및 다목을 각각 가급, 나급 및 다급으로 표시
2.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직무 분야 및 전문분야에 따라 구분하고 분야 및 등급을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기술등급이 초급인 기술자는 직무분야만 표시하고,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는 직무분야란에 건축사로만 기재합니다.
3. 기술등급은 구조물, 건축분야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궤도·전철전력·신호제어 분야는 「철도 안전법 시행령」 별표 5, 정보통신분야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6의 직무분야의 등급에 따라 표시합니다.
4. 교육수료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료한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교육 과정명과 해당 교육의 교육수료일을 기재합니다.
5. 입사 연월일에는 처음 근무일을 기재하고, 퇴사 연월일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4대보험 상실일)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장비 보유현황

진단업체명(등록번호) :

구분	장비명	규격 및 모델번호	장비 고유번호	검사 유효기간	등록 및 등록해제일	보관장소	비고

작성방법

1. 구분란에는 공통 또는 진단분야를 기재합니다.
2. 비고란에는 자기소유 또는 임차 등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등록번호 제 호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1. 상호
2. 대표자
3. 사무소 소재지
4. 등록 분야
5. 등록 연월일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에 따른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대장

분야	등록 제 호	등록일자			
상호		전화번호			
대표자	(한자)	생년월일		성별	
사무소소재지					
관련면허업종	제 호	겸업사항			
자본금					
납입자본금		변경연월일		실질자본금	
기재사항변경					
구분	변경내용		변경연월일		

[별지 제16호서식]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발급대장

210mm×297mm[백상지(80g/m²)]

[별지 제17호서식]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① 상호			
	② 대표자	생년월일		
	③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분야			등록번호 및 등록일	
변경사항	구분	변경 연월일	변경 전	변경 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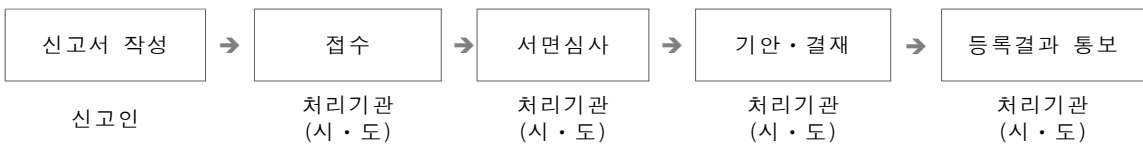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작성방법	① 상호란, ② 대표자란, ③ 사무소 소재지란은 변경 전의 사항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철도시설 [] 휴업
안전진단전문기관 [] 재개업 신고서
[] 폐업

접수번호	접수일
------	-----

신고인	상호	
	대표자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분야	등록번호 및 등록일	
신고내용	휴업예정기간 . . . ~ . . . (년 월)	
	재개업일	
	폐업일	
	휴업·폐업 사유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
graph LR; A[신고서 작성] --> B[접수]; B --> C[서면심사]; C --> D[기안·결재]; D --> E[등록결과 통보];
```

The flowchart illustrates the 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process. It consists of five sequential steps, each in a box, connected by right-pointing arrows. Below each box is the responsible entity. The steps are: 1. 신고서 작성 (신고인), 2. 접수 (처리기관 시·도), 3. 서면심사 (처리기관 시·도), 4. 기안·결재 (처리기관 시·도), and 5. 등록결과 통보 (처리기관 시·도).

신고서 작성	접수	서면심사	기안·결재	등록결과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시·도)	처리기관 (시·도)	처리기관 (시·도)	처리기관 (시·도)

– 26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양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양도인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종별	등록번호		
양수인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종별	등록번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8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양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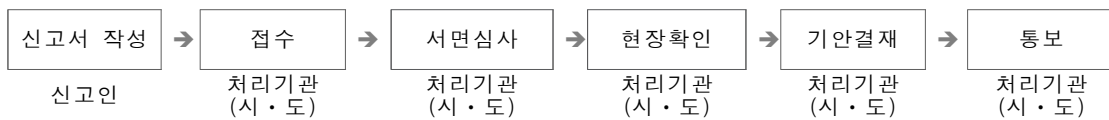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2. 양수인에 관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 3. 정기점검등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를 입증하는 서류(수행 중인 정기점검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법인합병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합병전 법인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종별	등록번호		
합병전 법인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종별	등록번호		
합병후 존속 또는 설립된 법인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종별	등록번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8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합병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합병 전 법인

(서명 또는 인)

합병 전 법인

(서명 또는 인)

합병 후 존속(설립) 법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합병계약서 사본 1부 2. 합병공고문 1부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1부 4.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에 관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 5. 정기점검등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를 입증하는 서류(수행 중인 정기점검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0조의2(교육훈련 등) ① 영 제28조제3항 및 제31조제6항에 따라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신규교육 및 신규교육 이수 후 5년마다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u> <u>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3조의2에 따라 설립된 철도협회</u> <u>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교육기관</u> <u>3. 「철도안전법」 제69조에 따라 지정된 철도안전 전문기관</u> <u>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정보통신공사협회</u> <u>② 제1항에 따른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에 관한 교육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u>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과정 및 그 내용 등 교육훈련
실시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다.

제10조의3(정밀진단 또는 성능평
가 결과보고서 평가) ① 법 제3
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성
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
써 시설물에 중대한 파손이나
공중의 안전에 위협을 발생시
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민간관리주체를 지도·감독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밀진단이나 성능평가의 실
시결과에 대하여 부실 점검·
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
여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3. 관리주체, 법 제44조의3에 따
른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
관(이하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정밀진단이나 성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부실 점검·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정밀진단이나 성능평가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철도시설 전체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의 방법과 그 결과의 적정성

2.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결과에 따라 제시된 보수·보강방법의 적정성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시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한 결

<신 설>

과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 결과보고서가 부실하다고 평가하는 때에는 부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우 불량, 불량 및 미흡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부실 구분의 판단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에 따라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평가하는 경우 그 결과보고서가 법 제31조 제3항 및 제33조제5항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한 관리주체,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이들을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의4(부적정한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 실시결과의 수정·보완) ① 법 제33조의2제3항에

제12조(철도시설관리자의 업무정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관리자의 업무정지 기준은 <u>별표와 같다</u>.	<u>따른 수정·보완의 제출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한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불복절차의 진행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한다.</u> <u>1. 정밀진단: 법 제33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u> <u>2. 성능평가: 법 제33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u> <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물이 공사 중이거나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를 대행한 자가 폐업했거나 영업정지 중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기한까지 결과보고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u> 제12조(철도시설관리자의 업무정지) ----- ----- -- <u>별표 1과</u> -----
---	--

제15조(정기점검 등의 대행) 법

제44조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건설,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및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기술사·기능장·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보유한 기관 또는 법인

<신 설>

<신 설>

<삭 제>

제16조(하도급의 통보) 영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하도급의 통보를 하려는 법 제44조의3에 따른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별지 제10호서식에 하도급 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진단측정 장비) 영 제34조

<신 설>

의3 및 영 별표 5의3에 따라 철
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진단측정 장비는 별표2와 같다.
제18조(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
관의 등록신청) ① 법 제44조의
3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 안전진
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
국법인을 포함한다)는 별지 제1
1호서식에 따른 철도시설 안전
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
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을 기
재한 서류
2. 법인의 임원 또는 기술인력
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2
9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결
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이 있
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그 임원 또는 기술인력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3. 등록분야별 별지 제12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장비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4. 법인인 경우에는 직전회계연도 또는 개사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을 말한다)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 명세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5.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 투자한 금액과 그 비율이 기재되어야 한다)

가.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
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
국인(법인을 포함한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
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같
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구
성된 법인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 안전
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를 받
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
며, 신청인이 제1호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기재
된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대
표자·임원이나 기술인력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일 때
에만 해당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이 법인일 때만 해당한다)

<신 설>

제19조(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

관의 등록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철도
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신
청서에 기재된 신청분야에 따라
구조물, 궤도, 건축, 전철전력,
신호제어, 정보통신 분야별로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② 법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
록증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다.

③ 시·도지사는 법 제44조의3
제2항에 따라 철도시설 안전진
단전문기관의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
른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대장 및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등
록사항을 기록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철도시설 안전
진단전문기관 등록대장 및 등록
증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 설>

각각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 영 제34조의3제1항 및 영 별표 5의3에 따라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이 확보해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자격 인정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다만,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외국법인에 소속된 외국인인 기술인력은 당사자의 기술자격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를 준용한다.

<신 설>

제21조(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변경·휴업·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와 등록증 재발급) ①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신 설>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4조의3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44조의3제5항에 따라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휴업·재개업·폐업 신고서에 휴업·재개업·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및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①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44조의8제1항에 따라 영업의 양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양수인과 공동으로 별지 제19호서식의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

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제18조제1항
각 호의 서류

3. 정기점검등에 대한 관리주체
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수행 중인 정기점검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이 법 제44조의8제1항에 따라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
한다)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
는 그 대표자와 합병 후에 존속
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
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별지 제20호서식의 철도시설 안
전진단전문기관 법인합병 신고
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제18조제1항 각 호의 서류

5. 정기정검등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수행 중인 정기정검등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이 영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양수인등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